

감사위원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엠씨빅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미비점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⑥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⑦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평가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⑫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이장에서 제시된 주요 감사업무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⑬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⑭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⑮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방식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 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 준법 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 ①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감사위원회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원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지원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①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 사전협의
- ② 외부감사 실시단계
 - 최소 분기 1회이상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
 -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 외부 정보 수집
 -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 외부감사인의 경고사항에 대한 검토
- ③ 외부감사 종료단계
 - 외부감사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검토
 -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
 - 외부감사의견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제 2장 구 성

제 8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해임)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 10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장 회 의

제 11 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4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2) 감사보고서의 승인·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재산조사
- (2)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 회사의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에 대한 요청
- (7)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
- (8)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치의 변경 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9)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운영실태 평가
- (10)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
- (11)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2)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
- 4.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5.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

③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 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내부회계관리 제도)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매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20 조 (전문가의 조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